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학 등록금 인상률 법정상한(물가상승률 1.2배 → 1.0배)인하〉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530호)

2026. 4.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문수 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6. 2. 3.
3. 회부연월일 : 2026.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등록금을 납부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각 학교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교육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며, 유치원 원비의 경우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등록금 인상 상한이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생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0항 및 제11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1.0배)로 낮추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생략)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u>물가상승률</u> 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u>물가상승률</u> 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⑨ (현행과 같음) ⑩ ----- ----- <u>물가상승률</u> ----- -----. ⑪ ----- ----- ----- <u>물가상승률</u> ----- ----- ----- -----. ⑫ (현행과 같음)
⑫ (생략)	

2. 검토의견

□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을 현행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에서 1.0배로 낮추어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법정 상한을 낮추려는 것으로,

①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가계의 부담 및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에 따른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②「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배로 규정되어 있어 이와 유사하게 상대적으로 높은 인상률을 낮추기 위한 취지임.

- 현행 「고등교육법」 제11조¹⁾는 등록금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10항은 대학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미만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으나,

1)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③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구성단위별 위원은 10분의 5 미만이 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를 대표하는 측과 학생을 대표하는 측이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8호의 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7조의2제1항의 연도별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⑩ 각 학교는 등록금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2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5년의 경우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결과²⁾에 따르면, 4년제 대학 기준 193개교 중 136개교(70.5%)가 등록금을 인상하였으며, 57개교(29.5%)는 동결하여 1인당 평균 등록금은 약 71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만원(4.1%)상승하였음.

또한, 전문대학의 경우 총 129개교 중 94개교(72.9%)가 등록금을 인상하여 1인당 평균 등록금 약 645만원으로 전년 대비 26만원(4.2%) 상승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증가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연도별·대학별 등록금 및 인상률 >

(단위 : 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4년제	국공립	416 (0.25%)	418 (0.50%)	418 (0.04%)	419 (0.15%)	420 (0.28%)	421 (0.17%)
	사립	745 (0.31%)	748 (0.30%)	749 (0.16%)	752 (0.42%)	757 (0.63%)	762 (0.75%)
평균		671 (0.35%)	673 (0.30%)	674 (0.10%)	676 (0.32%)	679 (0.50%)	683 (0.52%)
전문대	국공립	234 (△0.31%)	235 (0.43%)	236 (0.50%)	237 (0.15%)	238 (0.44%)	239 (0.51%)
	사립	601 (0.23%)	603 (0.27%)	604 (0.29%)	607 (0.40%)	619 (2.06%)	625 (0.91%)
평균		594 (0.25%)	596 (0.30%)	597 (0.23%)	600 (0.46%)	612 (2.01%)	618 (0.95%)
직전 3개연도 평균물가상승률		1.5%	1.3%	0.8%	1.1%	2.7%	3.76%
인상률 법정상한		2.25%	1.95%	1.2%	1.65%	4.05%	5.64%

자료: 교육부

□ 다만, 학생의 부담감소라는 효과의 반대 측면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는 경우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등교육의 질 저하 및 대학의

2) 교육부, 「2025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2025.4.29.

경쟁력 하락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2010년 이후,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1%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정부가 국가장학금 II유형과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을 등록금 인상률과 연계³⁾하여 등록금 인상을 억제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011년부터 10년간 연구비·실험실습비 등 교육·연구 예산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사립대학 교육·연구 관련 예산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도	연구비	실험실습	도서구입	토지매입	건물매입	학생경비
2011	5,401	2,163	1,514	1,932	770	28,960
2012	5,349	2,091	1,483	1,891	839	37,476
2013	5,148	2,100	1,482	1,635	386	43,226
2014	4,863	2,048	1,411	1,433	1,756	47,861
2015	4,664	1,953	1,402	685	223	50,010
2016	4,655	1,940	1,387	472	555	51,086
2017	4,470	1,937	1,284	532	720	51,281
2018	4,261	1,851	1,254	263	378	50,858
2019	4,109	1,796	1,215	547	340	49,265
2020	3,944	1,491	1,116	690	548	48,367
2021	4,212	1,501	1,117	138	225	48,244
2022	4,429	1,598	1,128	525	292	51,042

주: 학생경비는 교외·교내장학금, 학생지원비, 논문심사료, 기타학생경비를 의미함.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3.10.

- 또한, 최근의 입법경과를 보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인하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입법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보여짐.

3)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대하여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지 않거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 제한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온 바 있음.

□ 아울러, 고등교육기관과 달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유아교육법」에서 무상교육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정부 재정지원을 통하여 유아교육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원비의 상한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가 재정 부담 및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원비를 법정 상한에서 인상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등교육법」상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 원비를 동일하게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유아교육법」 제25조제3항은 유치원의 원비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4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 무상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혹은 표준유아교육비 등을 고려하여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원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치원의 경우,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교육부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이를 지원⁵⁾하고 있음.

4) 「유아교육법」 제24조(무상교육)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제4항의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관계기관 의견을 살펴보면,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인하하는 경우 교육 여건 개선에 필요한 교육 투자 등이 제한될 수 밖에 없으며,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등 37개 대학에서 대학 재정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 개정 법률(등록금 인상 상한율 1.5배 → 1.2배)에 따른 정책 효과성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고, 대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용에 관한 고시>

구 분	연 령	생년월일	지원액(1인당, 월)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유아학비·보육료)	5세	2020.1.1.~2020.12.31.	100,000원	280,000원	280,000원
	4세	2021.1.1.~2021.12.31.			
	3세	2022.1.1.~2023.2.28.			